

2026년 6월 20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등기사무직렬】

〈 2교시 〉

문제책형	시험과목	민법(25문), 민사소송법(25문), 상법(25문), 부동산등기법(25문)
①		

응시자 준수 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26. 6. 20.(토)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26. 6. 22.(월) 12:00 ~ 2026. 6. 24.(수) 17:00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26. 7. 1.(수) 12:00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 1】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존성 원천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③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변제기 전이라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문 2】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계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아파트 일부를 점용·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담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
- ②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 ④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문 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 ②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 4】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써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② 변호사법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하고 있는바, 변호사가 이에 위반하여 이른바 쌍방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에 한하고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 ③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④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문 5】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
- ② 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때까지는 설립중의 법인에 불과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 ③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공정한 청산사무 집행을 위해 이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에 따른다.

【문 6】자주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위 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②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토지의 점유자가 그 점유 기간 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③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 ④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 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 7】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더라도 채권자는 그 수량을 거절할 수 있다.
- ②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 ③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
- ④ 채권자의 수령거절의사가 확고하여 채무자가 구두의 제공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 ② 구분소유권은 물권의 기본적 성격인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확정적 구분행위인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신청, 분양계약 등의 행위에서 어떤 구분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 ③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④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문 9】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반면,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했던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②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현실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점유자가 위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
- ③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문10】부양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 ②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더라도, 혼인외의 자는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문11】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 ③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혹은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용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문12】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불가분성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설령 그에 따른 등기, 인도 등을 아직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③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지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3】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명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며,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 ②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 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문14】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 ④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15】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자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변경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 ④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16】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그 보증채무에 적용된 단기소멸시효는 배제되고 주채무와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ㄷ.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ㄹ.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ㅁ.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루어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그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문17】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대항력은 계속 존속한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 ④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문18】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 ②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고,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문19】다음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에서 자녀 乙이 분할받을 최종 구체적 상속분액으로서 옳은 것은?

< 인정사실 >

- 피상속인은 2025. 12. 31.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甲, 자녀 乙, 丙이 있다.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서 적극재산의 가액은 1억 1,000만 원이다(분할심판 시 가액 또한 동일하며, 달리 소극재산은 없다).
- 자녀 乙은 공동상속인 중 유일하게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이후 그 재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액 또한 동일하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없다.

- ① 500만 원
- ② 1,000만 원
- ③ 1,500만 원
- ④ 2,000만 원

【문20】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②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므로,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으므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 ③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④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문21】의사표시의 착오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표시자의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거나,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② 의사표시의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④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문22】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면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문23】공작물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과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 ④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공장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그 후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공작물의 하자과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문24】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3조뿐만 아니라 제741조에 따라라도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양자는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 ③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다.
- ④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문25】조합의 탈퇴 및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인 반면,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 ②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문제가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 ③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에 대한 재산분배 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청구의 포기과 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다.
- ④ 청구의 인낙은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체법상 채권, 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도 볼 수 있다.

【문 2】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 소취하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다.
- ③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④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였다면, 피고가 후에 소취하에 동의를 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 3】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이 신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
- ②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무효이다.
-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면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4】재판상 자백 및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신문 중에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증거자료에 그칠 뿐 재판상 자백으로 되지 않는다.
- ②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송물인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다.
- ③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 ④ 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되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반복할 수 있다.

【문 5】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과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지 않고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
- ③ 일방 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위조문서라도 상대방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으로 볼 수 있다.
- ④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문 6】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통상공동소송의 경우라도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자백은 전원에 대하여 자백으로서 효력이 있다.
- 나.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다. 원인무효의 등기가 공유물 중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라.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① 나 ② 가, 나 ③ 다, 라 ④ 나, 다, 라

【문 7】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다.
- ②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 ④ 인지액을 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상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하거나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이미 그 명령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 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당사자가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그 명령은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문 8】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②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거나 보조참가인이 제기하는 반소는 부적법하다.
- ③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가 제기된 경우, 제1심이 본소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면,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피고가 반소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본소에 대해 항소하고 만일 항소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때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하여야 한다.

【문 9】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이상,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감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녹음된 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있다.
- ②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소송 중에 작성된 사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이라도 상대방 동의를 없으면 그 증거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④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란 당사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므로 그것이 반증일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문 10】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만 포함되고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본소 소송목적의 값과 반소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으로 한다.
- ③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다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 ④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된다.

【문 11】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분을 송달할 수 없어서,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는데, 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 ② 항소권의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④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문 12】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는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제1심의 소송절차에만 적용되고 항소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는데,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은 변론을 연 경우는 물론이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
- ④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문 13】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 ② 주신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 증인진술서와 같이 증언이 아니라 그 서면이 서증이 된다.
- ④ 법원의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증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14】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형성소송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원고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③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 ④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다.

【문15】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인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②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특별로 처리하는 것뿐이므로, 소액사건도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 ③ 부장판사가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 등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아닌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한다.
- ④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문16】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한편 위 조항의 인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도 법원은 문서 전부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문17】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의 소에다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 ② 원고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병합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불분명함에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 ④ 양립 가능한 두 청구에 대한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 것과는 반대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의 두 청구에 대한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병합은 허용될 수 없다.

【문18】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②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③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의 당사자를 확정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

【문19】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정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문20】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②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
- ③ 당사자의 사실상 진술은 소송대리인이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문21】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도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유효하게 취할 수 있다.
- ②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④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문22】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이 정한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송법상 효과임에 그치고 실제법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 권리관계라고 하여 실제법상으로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원고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된다.

【문23】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상소하지 않고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확정된다.
- ③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보조참가인이 본인을 기준으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한 것이라면,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문24】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다.
- ②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 ③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중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
- ④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친다.

【문25】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이 없으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다.
- ③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한다.
- ④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문 1】주주제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8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문 2】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설립중의 회사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 ②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 ③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④ 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도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

【문 3】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② 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 ③ 업무집행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 ④ 사원은 정관의 작성 전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문 4】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 ②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 ④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 5】이사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도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액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상계 되어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 ④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문 6】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회사가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에는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없다.
- ②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 ③ 정관에 주식회사의 존립기간을 설립 후 10년으로 정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다.
- ④ 합병회사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문 7】상인 간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 ③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④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②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 ④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문 9】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가맹상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나,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 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④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 10】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②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③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룰 수 있다.
- ④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약정한 내용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문 11】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 ②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을 정한 경우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문 12】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나,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문13】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 ③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과 무관하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④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예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문14】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
- ②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营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더라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 ④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문15】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조항은 무효이다.
- ③ 주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소속의 공무원, 직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 ④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문16】상법상 각종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③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기한의 제한이 없다.
- ④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7】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자체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에 속한다.
- ②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지만, 그 제3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직무대행자가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의 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히 정한 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문18】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 및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정관으로 상법 제290조 각호의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발기인총회에 청구하여야 하나, 상법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9】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이나 국제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명과 실제의 영업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명의상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
-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법무법인은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농수산물 생산자는 상인이 될 수 없다.

【문20】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②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
- ③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 ④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21】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문22】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②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③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고 상속인이 이를 수계하게 된다.
-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대세효를 갖는다.

【문2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합병 결의 등의 경우에 인정된다.
-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③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더 이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 ④ 상장회사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특칙이 있다.

【문24】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비상장회사를 전제로 상법 조항에 의함)

- 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권을 갖는다.
- ②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 ③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 ④ 집행임원을 둔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의 요건흡수를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④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약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1】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甲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甲과 乙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있어야 하며, 이때 승낙서 등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②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고,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甲·乙·丙 세 사람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1/3지분은 甲의 소유로, 2/3지분은 乙·丙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甲·乙·丙 3인의 합유등기를 곧바로 공유자 甲(1/3지분)과 합유자 乙·丙(2/3지분)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문 2】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행정구역의 폐지·분합으로 기존의 A군과 B시가 폐지되고 그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C시가 설치된 경우, C시가 ‘승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C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아닌 등기명의로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3】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와 반대무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추가로 승계집행문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②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미등기토지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로 상속재산관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승소한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4】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토지 소유명의로인 甲과 그 토지 위에 소재하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로인 乙이 위 토지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동일인이라면 수탁자는 위탁자인 甲과 乙의 동의를 받아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간에 甲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신탁한 후 甲이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乙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乙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1필의 토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5】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③ A 부동산은 전부, B 부동산은 일부 1/2을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라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6】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7】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 등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② 등기원인은 ‘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을 각 기재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 또는 공탁서 원본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되지만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문 8】등기원인증서의 반환 및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대하여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등기신청을 위해 작성된 위임장은 원본 환부의 대상이므로, 위임받은 다른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위임장에 대한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신청인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대상이 되는 등기원인증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폐기할 수 없다.

【문 9】공유지분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자인 甲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甲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팔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유자인 甲의 지분 일부에 근저당권 등기를 한 후 甲지분 일부에 대하여 다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이 아닌 경우 ‘몇 번 甲지분 얼마 중 일부(근저당권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이전’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지분이 등기관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관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관리자들에게 각 ○분의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1개이므로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 10】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모두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한다.
-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첨부정보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 11】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등기기록과 대상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집행법원이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이 등기신청수수료가 감액된다.
- ③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촉탁서에 보호조치 대상인 등기관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여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후 법원이 해당 등기를 대상으로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촉탁서 기재사항과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문 1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는 종전 법정상속등기 시 이미 제출하여 등기관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등기소에 다시 중복하여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 ③ 분할협의서 작성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직접 협의분할에 참가할 수 없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된다.
- ④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신청할 수도 있고,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도 있다.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3】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1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 1동 건물의 소재와 지번의 표시로는 법정대지만을 기록하지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법정대지뿐만 아니라 규약상 대지도 기록하며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제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 ②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해당 토지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과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14】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
- ④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주등기로 하며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때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와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가처분채권자인 피고가 가처분집행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인 원고는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
- ④ 농지에 대하여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문16】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취득세 미납 통지 또는 등록면허세 미납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 ③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교체 후 상속인들은 법정매입금액에서 교체 전 상속인들이 매입한 금액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법정매입금액 전부를 매입하여야 한다.

【문17】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여야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에도 수리할 수 있다.

【문18】전세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되, 종전의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②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
- ④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채형

【문19】다음 <보기>에서 권리자 A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권자 A
- ㄴ.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이후 수익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 A
- ㄷ.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압류권자 A
- ㄹ. B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소유명의인 A
- ㅁ. C에서 B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C에서 A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소유명의인 A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20】등기관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으면,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21】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과 물건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부동산등기법 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 ③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당해 가등기의 등기기록상 원인이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22】<보기>와 같이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甲)이 같은 경우 토지의 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유 형	선등기기록	후등기기록
ㄱ	甲	甲
ㄴ	甲	乙 → A(근저당) → 甲
ㄷ	乙 → A(근저당) → 甲	甲
ㄹ	丙 → A(근저당) → 甲	丙 → B(지상권) → 甲

※ 甲, 乙, 丙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A, B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명의인을 의미함

- ① 유형 ㄱ의 경우 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② 유형 ㄴ의 경우 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③ 유형 ㄷ의 경우 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④ 유형 ㄹ의 경우 후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후등기기록상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1조의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23】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그 목적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능력(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될 수 있다.
- ③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에전등기를 신청한다.
- ④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문24】다음 <보기>에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당사자가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ㄷ. 1개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ㄹ.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만 주소가 변경되어 상이한 경우
- 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ㅁ

【문25】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정관이나 규약에는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등기기록에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채무자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 ④ 정관이나 규약에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